



도민이 중심
신리받는 의회

제408회 충청북도의회
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3. 4. 20.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23년 4월 11일
- 회부일자: 2023년 4월 13일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1. 1. 12. 개정, 2022. 1. 13. 시행), 「도서관법」 전부개정(2021. 12. 7. 개정, 2022. 12. 8. 시행), 「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」 전부개정(2022. 4. 8.),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(2017. 6. 13. 개정, 2020. 4. 7. 개정) 및 「충청북도 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(2022. 12. 30.)에 따라 인용 조문과 위원 직위 등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함.
- 조례의 제명에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가독성을 높이고자 함.
-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별도로 입법·심의하는 비능률을 방지하고자,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교육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3건)

가) 「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」

⇒ 「지방자치법」 개정 반영(안 제2조제2호다목)

–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8호 →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8호

나) 「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⇒ 「도서관법」 개정 반영(안 제1조)

– 「도서관법」 제30조 → 「도서관법」 제34조

다) 「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

⇒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개정 반영(안 제1조)

–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 →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

○ 다른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1건)

가) 「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」

⇒ 「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」 개정 반영(안 제4조제2항제3호)

– 「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」

→ 「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○ 충청북도 훈령 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 직위 정비(1건)

가) 「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」

⇒ 「충청북도 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」 개정 반영
(안 제3조제2항제1호)

– 정책기획관 → 과학인재국장

○ 제명 띄어쓰기 정비(2건)

가) 「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」

⇒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

→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나) 「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」

⇒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 → 충청북도단재교육상 조례

5. 검토의견

- 이번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문, 위원 직위 등 변경사항과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교육행정 전반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
- 「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」 외 2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, 「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」는 다른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, 「충청북도 교육행정 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충청북도 훈령 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 직위 정비를, 「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」 외 1건은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됨
- 조례별로 각각 개정하기 보다는 일괄 개정하여 입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됨